1996. 1. 1. 6
寺 十

1995年度行政事務監査處理結果

固　城　郡

1996. 1. 8
군주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1996. 1. 18 군수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연번	질문구분	질의요지 (건명)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 리 결 과 (처 리 계 획)	처리실과
1	시정 및 처리요구	발전추진위원회 효율적 운영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과제선정 및 추진실적이 미흡함으로 과제선정 등 효율적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바람.	○ 고성군발전추진위원 설치 운영 - '95. 8. 14 : 사무실설치 - '95. 8. 29 : 위원위촉 (30 명) ○ 과제선정 : 3개분과 6 건 - 건설.교통분과위원회 . 교통편리 대책, 군 재정확충 방안 - 산업.경제분과위원회 . 자연환경오염방지, 관광특산품개발 - 문화.복지분과위원회 . 노인복지 시책개발, 건건 여가선용 방안 ○ 추진계획 - 분과위원회활용 시책개발 : 분기회, 임시회활용 - 재정분석, 3세타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 - 종합적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 선정과제 추진상황 전반적 중간평가 : '96. 12월	발전추진위원회

1995 년 도 행 정 사 무 감 사 처 리 결 과

1996. 1. 18

연 번	질 문 구 분	질 의 요 지 (건 명)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처 리 계 획)	처리실과
2	시정및 처리 요구사항	. 당항포확장 편입에 따른 피해 보상	. 당항포확장사업 편입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있어 보상에 부적합한 선박과 기간만료된 어업권을 재면허함으로써 이에 대한 보상금 지급으로 군비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업무연찬과 부서간 협조체제를 유지공사에정지 어업권 재면허 등으로 군비를 손실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것.	○ 당항포확장개발 어업권 피해보상 중 선박에 대한 보상은 부산수산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에 용역의뢰한 결과 공유수면 매립으로 수지원이 감소되며 인근 해역에서 어로 활동을 하는 선박의 총생산량의 5 %가 감소되어 이에 대한 보상액을 산출하였으며, 공동어업 제404호 어업권은 '93. 12. 16일자로 면허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하여 기간만료 전년도에 수산업법 제4조(어장이용개발계획)와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의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을 득하였다가 기간이 만료되는 일자에 수산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어촌계대표인 어촌계장신청으로 공동어업 면허를 허가하게 되었으며,	문 화 공 보 실

1995 년 도 행 정 사 무 감 사 처 리 결 과

1996. 1. 구

연번	질문구분	질의요지(건 명)	시정및처리요구사항	처 리 결 과(처리계획)	처리실과
				향후 피해보상용역시 철저한 업무연찬과 관계부서와의 협의등 충분한 검증을 통하여 피해보상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1996. 1. 18 접수

1995年度行政事務監査處理結果

연번	질문구분	질의요지(건명)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 리 결 과 (처리계획)	처리실과
3	시정요구	신문고함 설치	'95. 추경예산시 요구한 신문고함 설치비 7,500천원을 본의회에서 1개소 500천만원만 의결 승인하였는데 집행부가 이를 무시하고 14개소에 증가 설치함으로서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것으로 생각되는바,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운영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여론 수렴창구가 될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95. 추경예산 의결시 의회에서 1개소 500천원이 승인되였으나 당시 독지가로 부터 신문고 14개를 기증받아 현재의 15개소 설치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설치된 신문고를 민원의 수렴창구로 적극 활용하여 민선자치 시대에 군민의 작은 소리도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열린행정을 펼쳐 나갈것이며, 앞으로 시책추진에 있어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로 추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슴.	

1996. 1. 18 준수

1995年度行政事務監査處理結果

안번	질문구분	질의요지(건명)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 리 결 과 (처리계획)	처리실과
4	시정요구	전보제한 관련 공무원 인사규정 준수	공무원 인사규정에 의한 전보제한은 1년으로 병사. 감사등은 2년으로 알고 있는데 95년도 전보제한에 저촉을 받으면서 인사발령된 내무과 지방행정주사 이수열외 13명은 공무원 인사규정에 위배 되는바 관계법 준수요망.	공무원 인사규정에 의한 전보제한 중이라도 직제기구의 개편이나 정원변경시는 전보제한에 관계없이 전보조치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전보할시에는 사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조치 할수 있습니다. 이수열외 13명을 전보조치한것은 직제기구의 개편과 인사규정에 의한 사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인사규정에 의한 전보제한 기간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과.

1995年度行政事務監査處理結果

1996. 1. 18 접수

인번	질문구분	질의요지(건명)	시정및처리요구사항	처 리·결 과 (처 리 계 획)	처리실과
5	시정 및 처리요구	당항포국민관광지 기족호텔 조기준공 대안과 대부게약서 미이행	당항포국민관광지기족 호텔 조기준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강구	○ '95. 12. 5 (주)당항포호텔 대표이사 김재천 내군 군수님빙문 면담결과 '95. 12. 13 채무해결 신문 공고후 새 대표이사 취임과 병행하여 건축근로자 체불임금 및 공사비등 채무를 '96. 1월 중순까지 해결하고 공사재개 약속 ○ (주)당항포호텔에서 채무해결후 부지대부기간 연장 신청시 현공정(70%)에서 준공시까지 추가 공사비 조달방법 및 공사이행 담보능력등을 확인 공사재개하여 준공토록 조치.	재무과

1995年度 行政事務監事處理結果

연번	질문구분	질 의 요 지 (건 명)	시정및처리요구사항	처 리 결 과 (처 리 계 획)	처리실과
6	시 정	.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의 불균형	. 고성읍을 제외한 면 지역주민과 소득이나 생계여건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비하여 '95생활보호대상자 책정내용을 보면 읍면간 심한 불균형 상태로서 형평을 잃고 있어 세밀한 조사를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대한 공정성과 일관성을 기하기 바람.	. '95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있어서 고성읍을 제외한 면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95. 11월에 기책정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총 115세대를 보호중지하였으며, . 생활보호(거택)대상자 생계비 지원이 개인의 소득, 재산, 가구원의 특성에 관계없이 가구원 1인당 월 균일한 생계비를 지원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96년부터는 기초생계비는 균일하게 지원하고 소득격차의 구분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지급토록 지원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소득격차를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 '96년 생활보호자 책정시에는 읍면간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공정성과 일관성있는 조사로 책정에 신중을 기하겠읍니다.	사회복지과

1995年度行政事務監査處里結果

연 번	질문구분	질의요지 (건명)	시정및처리요구사항	처 리 결 과 (처 리 계 획)	처리실과
7	시정및 처리요구사항	거류산성 문화재 구역 불법분묘이전	'95. 8월경 거류면민이 제출한 거류산성 문화재 구역내 불법분묘 이장을 요구하는 진정서 건이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 조치바람.	○. 거류산성 문화재 구역내 불법분묘 이장 요구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 현지조사케한바 거류산성 주변에 3기의 분묘가 산재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그 중 2기는 각각 고성군 거류면 거주 백철승씨(44세), 울산시 거주 허무씨(56세)가 분묘연고자가 조사되었으나, 나머지 1기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분묘의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그간 울산시 거주 허무씨에게는 4차에 걸쳐 전화설득 하였으며, 본군 거주 백철승씨에게는 3차 전화 설득, 1차 방문설득 하였던바, 허무씨는 지역민의 여론을 감안 개장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백철승씨는 미온적인 의사표시를 하였읍니다. ○. 본건은 분묘개장의 불이행을 방치함으로서 공익을 해할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장을 명할 수도 있으나, 본 분묘들로 인하여 공익에 위해를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 단지 지역민의 정서를 감안 본 건 분묘가 개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분묘연고자들은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1995年度行政事務監査處理結果

연번	질문구분	질 의 요 지(건명)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 리 결 과 (처 리 계 획)	처리실과
8	시 정 및 처리요구 사 항	연안청소선 처분대책	○ 년간 365일중 80일정도 운영으로 연안 청소선의 활용도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청소선의 처분대책 강구 요망.	○ 현재의 청소선은 내수용으로 제작되어 바다 활용이 부적격하고, 3시간이상 계속 운항시 유압가열로 인한 호수 파열로 장기운항 애로 및 청소선이 부자식으로 건조되어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 경우 운항이 불가하여 활용도가 저조한 편입니다. ○ 청소선은 총 104,368천원(도비86,800천원,군비37,200천원)을 들여 외자 조달구입 '93. 4월에 도로부터 관리전환 받은것으로서 군 임의처분은 곤란한 실정이므로 별도 처분계획을 수립, 도에 건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환 경 보호과

1995年度行政事務監査處理結果

연번	질문구분	질 의 요 지(건명)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 리 결 과 (처 리 계 획)	처리실과
9	시정 및 처리요구 사 항	배출시설행정처분에 대한 조치 철저.	○ 배출시설행정처분 내용이 고성세차장에 '95.1.12,2.7,3.21,3.24,4회에 걸쳐 점검결과 배출허용치초과로 동일한 지적이 되었는데, 경과 조치를 한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를 해야할 것임에도 계속해서 개선명령만 함으로써 약 3개월 동안 환경오염을 시켜온 실정인바 관련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철저와 엄정한 법 집행을 기하기 바람.	○ 고성세차장의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6조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6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처분조치하였습니다. - 1차위반 : 개선명령 - 2차위반 : 개선명령 - 3차위반 : 조업정지 10일	환 경 보호과

1996. 1. 18 군수

1995年度行政事務監査處理結果

연번	질문구분	질 의 요 지(건명)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 리 결 과 (처 리 계 획)	처리실과
10	시 정 및 처리요구 사 항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침출수 배수관 설치	○쓰레기매립장에서 침출된 물이 깨끗하게 정수되어 수질검사 결과 인근 농지에 피해가 없다고 하는데 기존 하천으로도 배수하는데 지장이 없음에도 직경 1m, 길이 400m의 배수관을 지하에 설치한 것은 주민에 대한 취악분야의 온폐 시설물로 여겨지며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되는바 기존하천으로 배수토록 개선요망.	○ 현 침출수 방류관은 '90년 쓰레기매립장 조성 당시 삼산면 판곡리 주민들이 농경지 피해등을 우려 방류관 매설을 요구함에 따라 설치되었음 ○ '95년 가뭄때는 방류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한 "예"도 있으나 폐기물관리법상 침출수의 방류수 수질기준에는 적합해도 이 기준은 농업용수 기준에 비해 높게 정해져 있음. ○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방류관은 계속 사용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되며, '94년도 방류관 매설 공사는 기존에 매설되어 있는 방류관의 노후 및 파손으로 교체하였음. ○ 쓰레기 매립장 현장 확인시 많은 의원님들께서 침출수 처리과정을 시찰하고 깨끗하다고 판정하였으며, 앞으로도 깨끗한 침출수 방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95.의회행정사무감사시서면답변서)	환 경 보호과

1996. 1. 1 공수

1995年度行政事務監査處理結果

연번	질문구분	질 의 요 지(건명)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 리 결 과 (처 리 계 획)	처리실과
11	시 정 및 처리요구 사 항	음식물 찌꺼기사료화 사업.	○ 예산서상 음식물찌꺼기사료화 사업에 7,000천원의 군비로 고성읍 동외리소재 무지개A.P.T에 설치 예정이었는데도 퇴비화 장비로 변경되었는바, 예산사업을 의회 승인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것.	○ 예산서상 음식물찌꺼기 사료화 장비가 퇴비화 장비로 명칭이 변경된 것은 동 사업시행 초기(예산편성당시) "사료화"와 "퇴비화"라는 용어가 혼용되어오다가 '95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면서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사업으로 통일되면서 퇴비화 장비로 변경하여 구입하였으며, ○ 예산서상 동장비를 고성읍 동외리 소재 무지개 아파트에 설치 예정이었으나, 음식물찌꺼기로 인한 악취발생으로 주민 민원 및 사후관리의 애로등으로 인가가 드문 재활용선별장으로 변경 설치 가동하여 퇴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환 경 보호과

1996. 1. 18 군수

1995年度行政事務監査處理結果

연번	질문구분	질 의 요 지(건명)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 리 결 과 (처 리 계 획)	처리실과
11	시 정 및 처리요구 사 항	정화조 청소 계획	○ 정화조 청소대상 1,728개소중 청소를 한 악 50%의 정화조와 잔여대상 정화조와 무허가및 미신고된 정화조에 대하여 조속 조사파악하여 청소토록 조치하고 연1회 청소명령 또는 통보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강구 바람.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정화조관련업무가 시행되기 이전에 설치된 정화조의 경우 관리카드의 미작성으로 인하여 정화조청소 업무에 차질을 가져왔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군에서는 '95. 5월 전읍면의 기존설치 정화조(미등록정화조)를 일제히 조사하여 미등록 정화조를 등록조치 하였으며, 현재 3,430여개의 정화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95. 12월에는 추가 미등록자 파악을 위하여 전읍면에 재조사를 지시한 바 있으며, 기존의 청소미실시자 및 추가관리 대상자에게는 빠짐없이 청소통지를 하여 청소미실시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95년 하반기에 정화조청소 통지관련업무를 전량 전산화완료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95.10.20일에는 청소대상자 88명에게 청소통지서('95.11~12.31)를 발부한 바 있으며, '95.12.21일에	환 경 보호과

1995年度行政事務監査處理結果

1996. 1. 10 군수

연번	질문구분	질 의 요 지(건명)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 리 결 과 (처 리 계 획)	처리실과
11				는 청소대상자 850명에게 청소통지서('96.1.1~3.31)를 발부하였으며, 군에서는 동기간내 청소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청소할 수 있도록 업무에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 경 보호과

1996. 1. 18 군수

1995年度行政事務監査處理結果

연번	질문구분	질의요지 (건 명)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처 리 계 획)	처리실과
12	시정 및 처리요구	경방 필 백화점 농.수.축산물전 개최 사업	경방 필 백화점 농.수.축산물산전 개최시 문제점으로 백화점 수수료가 높아가격 경쟁이 어렵고 원거리 수송에 따른 물류비의 부담이 크다는 실정인바 사전에 충분한 검토후 사업시행토록하고 농산물전 개최에 대한 사전충분한 검토후 계획수립 시행 및 비가공 식품에 대한 물량 확보와 물류 비용을 줄일수 있는 대책을 강구 바람.	. 차후 백화점 물산전 개최시 사전 백화점과 수수료 조정 협의후 가격 경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 원거리 지역 물산전은 사전 검토후 시행으로 물류비 부담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비가공식품에 대한 사전 품목 선정에 심혈을 기울려 근 전체 집하로 물류 비용은 생산자부담 없이 행정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1990. 1. 10
군수

1995年度行政事務監査處理結果

연번	질문구분	질의요지 (건 명)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처 리 계 획)	처리실과
13	시정 및 처리요구	저온창고 가동율 제고 및 지속추진 여부	근내 저온창고 17개소가 각 저온 창고별 가동율이 저조한데 대한 가동율 제고 대책을 강구하고 가동율이 저조한데도 저온창고 설치 지원 사업의 계속추진 여부를 정밀 분석 할것.	. 근내 저온창고 17개소중 95년 설치 완료된 3개소 (상리, 영오, 구만)는 당해 활용 가동율이 저조하나 차년도 부터 가동율이 높도록 조치 하겠스며 기타 개소에는 시기별 수확 농산물에 대한 활용 저장으로 지속적으로 가동율을 유지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 농산물 수요 예산량을 조사한 결과 삼산:2동/60평, 하일:1동/30평, 상리:2동/60평, 영오:2동/150평 영현:1동/100평, 마암:1동/60평, 동해:2동/60평으로 유자,버섯,참다래,단감,밤,화훼등의 품목 저장에 수요가 예상 생산자단체,작목반에서는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실정 입니다.	산업과

1996. 1. 10 공수

1995年度行政事務監査處理結果

연번	질문구분	질의요지 (건 명)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처 리 계 획)	처리실과
14	시정 및 처리요구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 위치 선정 부당 및 관리대책	마암면두호리376번지 (100평정도) 농산물간이집하장은 농산물 생산단지와는 원거리에 설치함으로서 당초 위치 선정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며 태풍"페이"로 삿타운이 파손된 상태로 방치 하였으며 농산물의 출하 집하시기 임에도 불구하고 그이용 실적이 전무한 실정임. (파손 시설에 대하여 조속히 복구토록하고 앞으로 집하장 활용 방안과 관리대책을 강구 하기 바람)	. 고성유자영농조합법인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암두호 위치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태풍"페이"로 인하여 일부 파손되었으나 '95. 12. 12일 복구 완료 하였으며 . 복구가 지연됨으로 설치 당해년도에 활용치 못하였으나 차년도 부터 유자 농산물 뿐만아니라 인근 타 농산물도 수확 시기에 맞춰 최대한 활용 할수 있도록 관리법인 대표와 협의 조치 하였습니다	산업과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1996. 1. 18 군수

연번	질문구분	질의요지(건명)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처 리 계 획)	처리실과
15	시정 및 처리요구	태풍"페이" 농작물 피해복구 무상양곡 일률지급	'95. 7. 23~24 태풍"페이" 피해복구지원시 무상양곡지급 기준(농산51195-1407, '95. 10. 14) 에 의한 농지소유규모 2HA미만으로 50~80%피해농가 80kg 5가마이내 80%이상 피해농가 80kg 10가마이내로 되어 있음에도 피해 한 농가당 일률적으로 5가마씩 지급. 피해정도 및 면적감안 차등지급 토록 개선할것.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시 농업재해대책 관련법규, 재해구호및 피해보상기준에 의거 농지소유 규모에 따라 피해량을 초과하여 양곡을 지급할 수 없도록 피해(개무)면적별 지원기준에 의거 농지소유 규모 2ha미만, 50~80%피해농가에 피해면적 554㎡(168평)까지 양곡 2가마 555㎡~737㎡(168~223평)까지 양곡 3가마 738㎡~922㎡(224~279평)까지 양곡 4가마 923㎡(280평)이상 양곡 5가마를 지원토록 하겠읍니다.	산 업 과

1996. 1. 18 군수

1995年度行政事務監査處理結果

연번	질문구분	질의요지 (건 명)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처 리 계 획)	처리실과
16	시정 및 처리요구	한명품사업 관리 대책	읍면한명품사업에 대하여 도.군비 자담등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산물 저장용 저온창고의 활용도가 미흡하며 이상기후에 의한 피해발생등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본 사업성과 거양에 우려가 되는바 효율적인 관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한읍면 한명품사업은 93년 4개면 94년 5개면 95년 5개면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95년 추진중 영오면은 저온저장고 1동/50평, 창고 1동/30평 건립 사업으로 사업추진중 태풍"페이"로 인하여 피해 발생 되었으나 사업자와 협의 계속 추진하여 '95. 9. 25 준공하여 당해년도 가동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있으며 여타면 한명품사업에 대하여 행정, 지도, 작목반 합심으로 효율적인 관리 체제를 구축 사업성과 거양에 만전을 기하고저 합니다.	산업과

1996. 1. 18 군수

1995年度行政事務監事處理結果

연번	질문구분	질 의 요 지(건명)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 리 결 과 (처 리 계 획)	처리실과
17	시정 및 처리요구	삼천포 화력발전소 석탄회 퇴비화사업 시범농가 선정 및 추진소홀	삼천포 화력발전소 석탄회 퇴비화사업 시범농가 선정시 대가면 최문호를 선정하여 '95.10.20 기계시설토록 하였으나 자담분에 대한 부담능력 부족으로 실험시설을 포기한것은 사업자 선정잘못과 업무소홀에 기인한것으로 사업대상자 교체또는 선정방법을 개선하기 바람	□ 대상자 선정과정 .석탄회의 가축분뇨처리 부자재 대체이용 연구사업 일환으로 산학관 협동으로 경상대학교 주관으로 '95.3.8 농어민 현장애로 기술개발 계획서 농림수산부 제출 -연구원구성: 경상대학교 고영두 박사외9명 .농림수산부의 현장애로기술개발 사업 과제선정 및 추진계획 확정 -'95. 8.16일 .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술개발사업 협동연구자 참여농가중 축분발효시설 미설치 농가에 대한 축분건조 실험시설 설치지원계획 수립 확정 - '95. 9 26일 -협동 연구자 참여농가 현황	축 산 과

주 소	성 명	축종	발효시설설치여부	비고
대가척정	최문호	낙농	미 설 치	
아암삼락	장지성	양돈	미 설 치	
거류감서	고영국	양계	설 치	

□ 추진상황
.군재정상 기계설치비에 한하여 군비70%,자담30%를 지원 축분발효실험시설을 설치코자 하였으나 보조시설에 대한 자부담의 과다투자 부담으로 1농가 사업포기

기계관련과다으로 실제설치비가 상승하여

□ 조치결과
.소요사업비중 사업포기에 따른 군비 전액삭감
- 삭감액: 38,500천원
.사업포기농가(최문호)는 협동연구자로 계속참여하되 기존보유기계(로다) 이용방법으로 전환

1996. 1. 18

1995年度行政事務監事處理結果

연번	질문구분	질의요지(건명)	시정및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처리계획)	처리실과
18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가로수 상록화사업 시행방법 부적정	'95.가로수 상록화사업을 실시하면서 민간 조경업자와 경쟁에 의하지 아니하고 산림조합위탁시행으로 예산절약에 역행한 것으로 보아지며 며집행예산에 대하여는 공개경쟁입찰로 예산절약방안강구	○ 임업협동조합에 위탁시행함은 임업협동조합 육성차원에서 위탁시행하였으며, 또한 임협은 비영리단체로 설계시 이윤및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음으로 예산절약에 역행한다고 볼수 없으며, 금후 예산이 더 절약될 수 있는지를 계속 검토하겠슴.	산림과
19		밤나무 피해조사 철저	올해 방수확량에 대한 통계자료가 부실한 바 정확한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벙충해도 적기에 방제토록 대책을 수립하기 바라며, 밤나무피해도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실정맞는 개선책강구	○ 밤가격안정및 재배농가의 지원·육성정책 자료 활용코저 수량별,품등별로 표준지를 읍.면당 2개소선정 밤작황조사 및 밤수확조사,밤수확예상량조사등 3단계로 구분하여 매년실시하고있으며, 시군별 밤나무재배본수조사는 매 3년마다 조사 통계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96년도 밤나무재배본수조사시 정확한 조사가 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밤나무해충 항공	

1995(1996. 1. 18)年度 行政事務監事處理結果

연번	질문구분	질의요지(건명)	시정및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처리계획)	처리실과
				방제 대책수립에 반영하여 모든 재배농가에 혜택이가도록 조치하겠으며, 밤나무 피해조사도 실정에 맞게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여 피해농가의 실질적인 보상이 주어지도록 개선책을 강구하겠슴.	산림과
20	〃	대가면 척정리 산림 불법훼손	보전임지 전용허가건 대가면 척정리 산287-15번지 면적 9,020㎡를 종교시설을 위해 불법훼손으로 사법처리 되었다고 재허가는 타당치 못하므로 이러한 일이 발생치않도록 특별 조치 강구	○ 대가면 척정리 산287-15번지내 불법훼손지에 대하여 사법처리후 보전임지전용을 허가하였으나, 금후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는 신중을 기하여 허가하겠슴.	
21	〃	가로수 피해변상금 활용 상록화사업과 사후관리계획	가로수 피해변상금 11,090천원의 잔액이 있음에도 보식치않아 가로수 상록화사업 차질 예상됨.	○ 임시보관중인 가로수 변상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사용토록 되어있음으로 '96예산 11,968천원을 확보 고성읍 시가지 은행나무및 국	

1995年度行政事務監事處理結果

연번	질문구분	질의요지(건명)	1994 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처리계획)	처리실과
21			제거 처소에 보식치않아 가로변 상록화사업이 부진함으로 식재된 가로수의 사후관리및 보식계획수립 시행하기 바람.	도 33호선 목백합 가지전지를 실시하여 도로변 경관조성은 물론 가로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슴.	산림과
22	〃	거류면 용산리 고성아스콘 토석채취 허가	거류면 용산리 고성아스콘(주)에 94.6.7 - 99.5.7까지 토석채취허가 연장으로 국도에서 산이 훼손된것을 볼수있고, 경관이 심하게 훼손되고있으므로 이에대한 산림훼손방지 및 효과적인 복구 대책	○ 거류면 용산리 고성아스콘(주) 토석채취허가지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하여 경관저해요인을 최소화 하겠으며, 토석채취완료후 계단식 복구가 되도록 조치하겠슴.	

1995年度行政事務監査處理結果

1996. 1. 18

연번	질문구분	질 의 요 지(건명)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 결 과 (처 리 계 획)	처리실과
23	시 정	당항포어촌계 해안관광마을 조성사업	당항포어촌계의 해안관광마을 조성사업중 당초 사업비1,282,199천원으로 시공하이 준공시에 1,457,363천원으로 증액된 사유 규명과 거액의 사업비 집행을 어촌계에 위탁 함으로써 입찰 및 부지매입 보상에 있어 제대로 감리조차 하지 않아 행정의 누수를 초래하고 있는바 예산편성과 집행에 이르기까지 지도 감독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 명확한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당항어촌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안관광마을 조성사업비는 건축비가 1,072,500천원이고 (도비 483,900천원 군비 150,000천원 융자:104,400천원 자담 334,200천원)그외 투자한 금액은 총 482,363천원 (부지매입 400,000천원 부지등기 6,300천원 분묘이장(공고)4,000천원 설계비및감리비(부영설계)50,000천원 지질조사 1,500천원 토목설계 3,200천원 농지전용대체조성비 17,363천원)등으로 건축비포함한 총공사비는 1,554,863천원임 ○ 그러므로 총공사비중 지원금액(융자금포함)은 738,300천원이며 그외금액 816,563천원은 어촌계 자담으로 충당하였음. ○ 모든 사업비 집행절차는 어촌계 총회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그 결정된 사항을 군에서는 확인. 감독. 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토지매입 과정은 어촌계 총회에 의하여 토지주와 어촌계간 쌍방계약에 의거 이루어진 사항으로 군에서 관여할 사항이 되	수산과

1996. 1. 18

1995年度行政事務監査處理結果

건번	질문구분	질 의 요 지(건명)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처 리 계 획)	처리실과
				지 않으며 부지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동사업이 원만히 추진된 것입니다. ○ 동 사업이 마무리 되면 어촌계는 성실한 관리자로써 수신 시설관리규정에 의거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것이며 또한, 우리군에서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어민소득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95年度行政事務監査處理結果

번	질문구분	질 의 요 지(건명)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처 리 계 획)	처리실과
4	시 정	연안방지폐선에 대한 조치 소홀	연안에 4~5년된 폐선이 몰골사나운 형태로 있어 경관이라던지 환경오염등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데 비해 방치폐선에 대한 예산이 있음에도 조사의 부실로 처리하고 있지 않고 있음은 행정의 누수라고 생각하는 바 철저한 실태조사등 대책강구로 조속처리토록 바람.	○ 매년 방치폐선 방치대책에 의거 방치폐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방치폐선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95년도에는 폐선 총13척(19.20톤)을 포크레인으로 폐선처리(해체)한 바 있슴. ○ 앞으로 방치폐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발생된 폐선이 있을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 자연경관 보전과 연안오염 방지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산과

1995年度行政事務監査處理結果

연번	질문구분	질 의 요 지(건명)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처 리 계 획)	처리실과
25	시 정	공동어장 정화사업 추진부적정	어촌계 공동어장 정화 사업비 중 국비와 자담의 내용과 정화 사업 세부계획등 어촌계 간부 또는 계원에 대한 공개가 미흡하며, 사업비중 국비지원분 이외의 자부담 사업은 형식에 치우치고 1인 독점으로 성과가 저하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해당어민 참여 등으로 사업공개 및 사업추진 방법을 적극개선 바람	o. 어촌계에서 실시하는 공동어장 및 공유수면등 지선수면에 대한 어장환경정화사업은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어촌계장,어민후계자,어촌지도소,수협,어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에서 일괄정화 구역을 협의결정하고 사업자 선정시는 해당어촌계에서 총회의결 결정된 화의록과 어촌계 자담부분에 대한 자담예치증명서 첨부 유무를 확인한후 사업자로 선정하고 있으나 어촌계간부 또는 어민의 공개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어촌계의 어장환경정화사업 시행시 다수의 지선어민이 청소현장에 참여토록 유도(지도)하도록하여 어촌계소속 어민들이 사업내용을 알수있도록 함과 아울러 청소효과를 높히고 연안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지선민스스로가 알수있도록 하겠슴. o. 정화사업 시행에 있어 청소선(양식어장 형망선)은 당해 어촌계에서 형망선 선주와 계약에 의거 사용하고 있으므로 우리군에서 알선할수는 없으나 우리군 관내 형망선으로 지정된 어선이 8척있으므로 지방자치화시대에 우리군 관내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8척을 골고루 사용할수 있도록 어촌계에 지도하겠슴.	수 산 과

1995年度行政事務監査處理結果

연번	질문구분	질의요지 (건명)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처 리 결 과 (처리계획)	처리실과
26	시정 및 처리요구	고성 우체국 앞 도로무단점용 상행위	고성 장날 및 수시로 고성우체국 앞 도로에 외지 상인이 대거 몰려와 집단적으로 상행위를 하고 있어 고성 공설시장 및 인근 점포를 소지한 상인은 세금만 내고 돈은 외지 상인이 다벌어 간다고 불만이 조고되고 있으며, 시장에 화재가 발생시 소방차의 진입이 전혀 불가하므로 무질서한 도로점용 상행위를 강력 단속 할 것.	○ 고성 우체국앞 도로는 시장상가 준공전까지는 잠정허용구역으로 지정하여 영업시간, 허용행위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고성 장날은 읍사무소와 합동으로 구역별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가두방송,홍보및 단속으로 소방도로를 확보하고 있으며 무질서한 도로점용 상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슴.	건설과 토목계
27	〃	도로점용허가	고성 우체국앞 도로의 노점상인들끼리 노상점에 대한 권리금이 200 - 300만원 정도로 거래가 된다는 여론인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상인 보호 및 도로질서 정리 차원에서 철저한 단속 실시와 적빕절차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 고성 우체국앞 도로는 시장상가 준공전까지는 잠정허용구역으로 신규, 재발생시 기존 노점상도 철거된다는 인식으로 자율적 규제 분위기조성하고 있으나, 일부 노점상이 인근 상가, 주민과의 마찰이 있어 경찰관서와 협조하여 철저한 단속으로 도로질서를 정리 할것이며, 도로점용 허가는 불가하며, 시장상가 준공후는 전면 금지구역 지정하여 강력히 단속 할 예정임.	토목계

1995年度行政事務監査處理結果

연번	질문구분	질의요지 (건명)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처 리 결 과 (처리계획)	처리실과
28	시정 및 처리요구	암반관정개발 폐공관리	○ 한해대책 암반관정 개발시 용수량 부족으로 인하여 폐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공된 곳은 토사를 폐공내에 주입시켜 그라우팅으로 완전히 밀폐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폐공은 조속히 조치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 '94 ~ '95 한해대책용으로 개발한 암반관정은 총 203공에 성공공 142공, 폐공 61공이며, 성공공 142공에 대해서는 오염방지 그라우팅시공 조치하였으며, 폐공 61공에 대해서도 케이싱 절단후 모래 충진 몰탈처리로 폐공조치 하였슴.	건설과 농지계
29		'94 한해대책 소류지 준설 잔토 방치	○ 94년도 한해의 소류지 준설작업시 준설에 따른 잔토를 처리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으므로 미처리 수량을 파악하여 조속히 잔토처리 대책강구 조치 할 것.	○ '94 ~ 95등안 소류지 준설사업은 145지구에 349,429㎥ 를 시행하였으며, 준설토가 미정리된 지구는 사곡지구로써 '95년도 사업비 16,000천원으로 7,371㎥ 를 95년 2월 17일부터 3월 18일 동안 준설토를 잔토처리하는 과정에 있어, 사토장을 먼거리로 선정할 경우 사업비 과다소요는 물론 콘크리트 도로포장을 파손할 우려가 있어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될것이 우려되어, '95가을착수 경지정리 예정지로 선정되어있는 소류지 하부 (전 수리계량 : 이 관열)에 우선 사토키로하고 당해 영농에 따른 수곡관계는 수리계에서 보상키로 사전 협의한후 사토처리하였으며, 이는 경지정리 사업 추진시 정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농지계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1996. 1. 18 군수

연번	질문구분	질 의 요 지 (건 명)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 리 결 과 (처리계획)	처리실과
30	시정 및 처리요구	o옥수골 온천개발사업 부진	o옥수골 온천개발사업이 경상남도 고시 제444호('90.1.15)로 온천지구로 지정된 이후 온천법에 의거 개발계획 수립후 5년이 지난 지금에도 개발이 되지않고 있는 실정이니 동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 수립시행 할것	o옥수골 온천지구에 대하여는 '96년내에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을 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 시 과
31	〃	o상족암 지하수 폐공 조치	o군립공원 상족암지구 급수시설 지하수 2개공에 100M/T 용수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개소를 굴착하면서 용수량 부족으로 인한 폐공을 일폐처리않고 방치하고 있음. 즉시, 일폐 폐공 처리하기 바람.	o군립공원내 지하수 개발을 위하여 5개공 굴착후 현재 이용중 2개공, 기폐공 2개공, 미폐공 1개소를 '95. 12. 20일자로 폐공조치 하였습니다.	도 시 과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연 번	질문구분	질의요지(건명)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 리 결 과 (처 리 계 획)	처리실과
32	시정 및 처리요구	배둔폐천부지내 A.P.T 지구 매각 부당.	배둔폐천부지내 A.P.T 지구로 지정된 곳은 건축허가가 불가함에도 A.P.T 부지로 매각함에 따른 철저한 사후처리 대책 강구.	○ 배둔폐천부지내 A.P.T 지구는 '91.11. 도시과 도시계에서 배둔폐천부지 택지조성 분양 계획에 의거 단독택지와 A.P.T 지구를 지정하여 재무과에 매각 의뢰함에 따라 '91.11.30부터 5차례에 걸쳐 배둔폐천부지 매각입찰 공고결과 낙찰자가 없어 '94.11.28 수의계약에 의거 매각되었음. ○ '95.12월 건설교통부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있어 '96. 2월이내 관계법이 개정되면 A.P.T 건축 허가는 가능할것으로 사료됨.	재무과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연번	질문구분	질의요지(건명)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처리계획)	처리실과
33	시정 및 처리요구	o거류면지역 남강물 수송관 매설공사보수	o기류면지역에 남강물 수송관 매설공사를 실시하였는데 몇개월이 지나도록 도로의 아스콘 절개부분이 정상적으로 보수되지 않아 교통사고 요인이 있는바 조속 보수조치 할것.	o거류면 상수도 확장공사 관로매설 터파기 후 아스콘 포장복구 침하로 인하여 주민통행 및 교통사고의 요인이 되어오던 부분에 대하여 '95. 12. 6일 아스콘 21㎡를 투입하여 정상적으로 보수 완료	도 시 과
34	〃	o상수도관의 노후로 인한 누수현황과 대책	o상수도관의 노후로 인하여 수도물의 누수로 인해 고성군 예산에 많은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누수의 손실 현황을 조사하여 상수도 누수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급수를 위한 시간대에 철저한 인력관리로 정확한 시간에 급수되도록 조치	o고성상수도 관망 및 누수탐사 용역 시행으로 옥외누수지역 고성읍 동외리 124-1번지 22개소에 대하여 보수조치 완료	도 시 과

1995年度行政事務監査處理結果

1996. 1. 고성

연 번	질문구분	질 의 요 지 (건 명)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 리 결 과 (처 리 계 획)	처리실과
35	시정 및 처리요구 사 항	. 부정·불량의약품 판매 및 무면허 의료행위단속	. 부정, 불량의약품 판매 및 무면허 의료행위가 고성군 전역 특히 고성장날에 많이 보이는데 집중적으로 인력을 투입하여 예방적인 차원에서 부정, 불량의약품 판매 및 무면허 의료행위자를 강력히 단속할 것	○ 무면허 의료행위 및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단속 실시 . 기 간 : '96. 1. 8 ~ '96. 2. 7까지 . 대 상 : 약국 12개소, 시장 3개소 . 중점단속사항 - 부정, 불량의약품 판매행위 - 무면허 의료행위 -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 - 기타 관계법규 위반사항등 . 단속반 : 약사감시원외 1명 . 위반자조치 : 고발등 강력한 행정조치	보 건 소 (예 방 의 약 계)

1995年度行政事務監査處理結果

연번	질문구분	질의요지(건명)	시정및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처리계획)	처리실과
36	시정 및 처리요구	4-H 운영자금집행 부당	4-H 운영자금 집행건에 대하여 4-H 운영자금 1억원 적립을 목표로 정기적금및 이자포함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도 이자수입중 5,830천원을 판공비적 성격으로 집행한 것은 본 지원기금 본질에 위배되어지는 것으로 차후 1억목표 달성될 때까지 집행하지 말고 필요한 예산은 군예산 반영 조치	95년 4-H 후원기금은 정기적금 이자 수입금액을 본 군 4-H 후원회 이사회 결의에 의거 영농 4-H회 선진지견학 등 4-H 육성사업에 지원하였으며 96년도 지원사업은 추후 본 군 4-H 후원회 총회의 결의에 의거 기금 1억원 조성시까지는 사용하지 않도록 통지하고 필요한 예산은 1차추경시 요구하도록 하겠음.	농촌지도소

1996. 1. 18
국회

건 의 사 항

1995 년 도 행정사무 감 사 처 리 결 과

연 번	질 문 구 분	질 의 요 지 (건 명)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처 리 계 획)	처리실과
1	『건의사항』	송학및 내산고분군등 문화재 개발사업 추진요망	송학 고분군은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화사업을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사적 120호로 지정된 동해 내산리 고분군은 금년 여름에 벌근작업을 한것 외에는 방치되고 있는데 문화재의 균형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유지를 조기 매입하는등 관광자원개발과 병행하여 조속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구체적인 관리계획 수립요망	○ 국가사적 119호 내산리 고분군 정비 사업은 고성군의 66대 사업으로서 □ 사업개요 사업기간 : '98 ~ 2000년 사 업 량 : - 토지매입 10,000 ㎡ - 기반및 조경시설 1식 - 건축 (화장실) 1동 - 발굴용역 1식 사 업 비 : 670 백만원 (국 469, 도 101, 군 100) □ 위 계획과 같이 '97년도 국고보조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을 '96. 1월중 신청하여 승인되는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 화 공 보 실

1995年度 行政事務監査處理結果

연번	질문구분	질 의 요 지(건명)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 리 결 과 (처 리 계 획)	처리실과
2	건의사항	쓰레기 문전수거를 타종식수거로 개선	○ 현재 쓰레기 문전수거를 시범으로 고성읍에 실시하고 있는데 맞벌이 부부등을 위하여 문전수거를 실시하는 것은 좋으나, 당초 타종식 수거보다 주변환경이 오물과 악취로 뒤덮혀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전으로 퇴보되는 실정이므로 앞서 실시한 타종식으로 수거토록 하는등 실질적인 개선방안 강구 요망.	○ 쓰레기 문전수거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주민의 쓰레기수거 행정서비스 제공의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문전수거를 실시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에서도 타시.도에서는 '94년도부터 거의 문전수거를 실시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실시초기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및 음식찌꺼기의 물기 미 제거등으로 악취발생등 부작용이 없지는 안으나, 이는 군민의 청소행정에 대한 의식이 항상되면 줄어들것이라 확신하며 군에서는 이를 위해 문전수거 실시지역 전지구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쓰레기불법 배출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문전수거를 조기 정착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환 경 보호과

1990. 1. 18

1995年度行政事務監査處理結果

연번	질문구분	질의요지 (건 명)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처 리 계 획)	처리실과
3	건의사항	농산물간이집하장 활용도 미흡	간이집하장설치 사업을 완료하고 그 활용도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간이집하장 설치 계획을 변경하여 신설을 지양하고 생산적인 부본에 투자하여 주민 소득증대를 이룰수 있도록 개선 하고 기 설치된곳은 마을공동작업장 보관창고등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강구 바람.	. 농산물간이집하장 94년 6개소 95년 3개소로 관리운영 주체가 농협, 영농법인, 작목반으로 기 신청된 96년 사업 사행시 운영주체, 위치등을 고려 심층히 선정 설치 시행 하겠스며, 간이집하장설치 사업은 앞으로 지양하고 생산적인 부본 사업에 역점을두고 농민소득증대에 기여 하겠습니다. . 기 설치사업장에 대하여 농산물 선별,포장등 마을 공동작업장과 회의실등으로 최대한 활용되도록 관리주체측과 협의 지역민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업과

1995年度行政事務監査處理結果

연번	질문구분	질 의 요 지(건명)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처 리 계 획)	처리실과
4	건 의	동해면의 수온약층 등 유사사례 발생대처 방안	'95년도에 수온약층 등 복합적인 작용으로 동해연 지구에 피조개 채묘가 부진했는데 '96년도에는 이런 유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처 방안 강구 요망	o. '94년에는 우리군관내 진해만 해역의 좋은 해황에 힘입어 약20억미 이상의 피조개채묘를 생산한바 있으나 '95년에는 피조개채묘생산이 거의 전무한 상태로서 그 원인으로는 진해만 해역의 저층에 저산소수괴의 형성에 의한 모패의산란유발이 불실하였거나 산란된량이 극히 미소하였던 것으로 추정분석은 되고있으나 그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분석되지 않았슴. o.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어업행위는 극심한 주기성(해걸이)현상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주기성(해걸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 또한 정확히 규명된바 없는 실정임. o. 따라서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해황,적조현상,저산소수괴등 어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구명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오랜시간이 소요되는바 '95년 진해만 피조개채묘의 부진현상에 대하여는 '96년에 우리군에서 진해만 광역정화사업(900ha)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동사업을 완벽하게 시행 할 것이며, o. '95년과 같은 피조개채묘 어입부진 현상이 재발할시는 가능한 수단을 동원 어민들의 간접지원 혜택을 입을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건의하여 어민부담을 경감토록 노력하겠슴.	수 신

1995年度行政事務監査處理結果

연 번	질문구분	질 의 요 지 (건 명)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처 리 계 획)	처리실과
5	건의사항	약국의 제약판매와 보건소 이전 대책	약국에서는 반드시 약사 면허증 소지자로 하여 약을 제조·판매 하 수 있도록 조치하여 군민이 약국을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책과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바라며, 전체군민의 보건을 위하여 현재 협소한 고성군 보건소 이전 계획 방안을 강구 요망	○ 무면허 의료행위 및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단속 실시 . 기 간 : '96. 1. 8 ~ '96. 2. 7까지 . 대 상 : 약국 12개소, 시장 3개소 . 중점단속사항 - 부정, 불량의약품 판매행위 - 무면허 의료행위 -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 - 기타관계법규 위반사항 . 단속반 : 약사감시원외 1명 . 위반자 조치 : 고발등 강력한 행정조치 ○ 보건소 이전 신축 계획 . 대지 : 1,000평, 건물 : 464평 . 재원 : 부지(군비), 건물(국비) . 시설 및 건물 : 보건복지부 기본설계도 . 예정위치 ①현공설운동장(군유지불하예정) ②고성읍송학리411-3일대 ③고성읍기월리631-1일대	보 건 소

1996. 1. 16 군수

1995年度行政事務監査處理結果

연번	질문구분	질의요지(건명)	시정및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처리계획)	처리실과
				. 부지확보계획 - 공설운동장 군유지 불하 - 현 국유지인 보건소를 불하후 매입하여 재매각하는 방법과 예산 확보하여 고성군 장기발전 계획과 보건의료 실정에 맞는 위치 선정중에 있음.	

1995年度行政事務監査處理結果

연번	질문구분	질 의 요 지 (건명)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 리 결 과 (처 리 계 획)	처리실과
6	건의사항	당항포 관광지 공적비 건립	○ 당항포국민관광지 설립 공로자 공적비 건립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소집과 기본설계등 공적비가 조속 건립될 수 있도록 조치요망	□ 공적비건립 추진위원회 개최 . 일 시 : '95. 12. 14(목) 11:00 . 장 소 : 관광지내 속시개 횟집 . 참 석 : 박충웅 군의원외 관계공무원등 12명 ○ 회의 결과 가. 임원 선출 (5명) - 추진위원장 : 1명, 박충웅 (군의원) - 부위원장 : 2명, 정정갑 (노인회 지회장) 안수일 (군의원) - 재 무 담 당: 1명, 제두근 (고성문화원장) - 총 무 담 당: 1명, 당항포관리소장 나. 주요 논의사항 . 공적비 명칭결정 - "공적비"건립은 보류, "연혁비"건립 추진 . 건립 규모 - 연혁비(초안)작성후 글자수에 따라 추후 결정 . 문안작성 의뢰 - 서울거주 한산신문 서울지국 부사장 제재형씨 에게 의뢰	당항포 관리 사무소

1995年度行政事務監査處理結果

연번	질문구분	질 의 요 지 (건명)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 리 결 과 (처 리 계 획)	처리실과
				○ 금후 계획 . 사업비 추가확보 - 예상소요 사업비 20,000천원 ('96당초 예산 9,000천원 확보) - 부족분 11,000천원 추경확보 . 기본설계 및 세부계획 - 비문안 작성후 확정 - 추진협의회 소집 : '96. 1월 중순 - 건립규모,건립장소등 결정 설계실시 착공	당항포 관리 사무소